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행정안전부령 제38호, 2018.1.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553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1호, 2018. 1. 18. 공포·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구비 등의 반환을 위한 반납고지서 서식을 정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첨부서류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시설의"를 "지역의"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8로 하고,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의6(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시·도(시·군·구)의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임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지정 내용
- 지역명: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협조요청 사항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정기(매월)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지역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해제 내용

- 지역명: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해제 일시:
- 해제 사유: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관 고시 제 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대상지역			지정(해제)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지역명	소재지	소유자(관리 자·점유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앞쪽)

<수납은행 보관용>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일금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반납자 귀하

<시·군·구 보관용> 영수확인통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일금

₩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수납은행장 직인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반납자 귀하

<반납자 보관용> 영수증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반납자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주요 업무				
지정기준 충족여부	1. 조직		2. 인력	3.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행정안전부	→	심사 행정안전부	→	결정 행정안전부	→	통보 행정안전부
------------------	---	-------------	---	-------------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

신청인 정보	업체명 (성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관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 연구원(소) []정부출연 연구원(소) []대학교 []기타				
	소재지 (주소)	(본사) (공장)			

신청제품	제 품 명	모델명(규격),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연 장 사 유			
	매 출 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 원	수 출 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
	주 수 요 처			
	제 품 설 명(요약)			

업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3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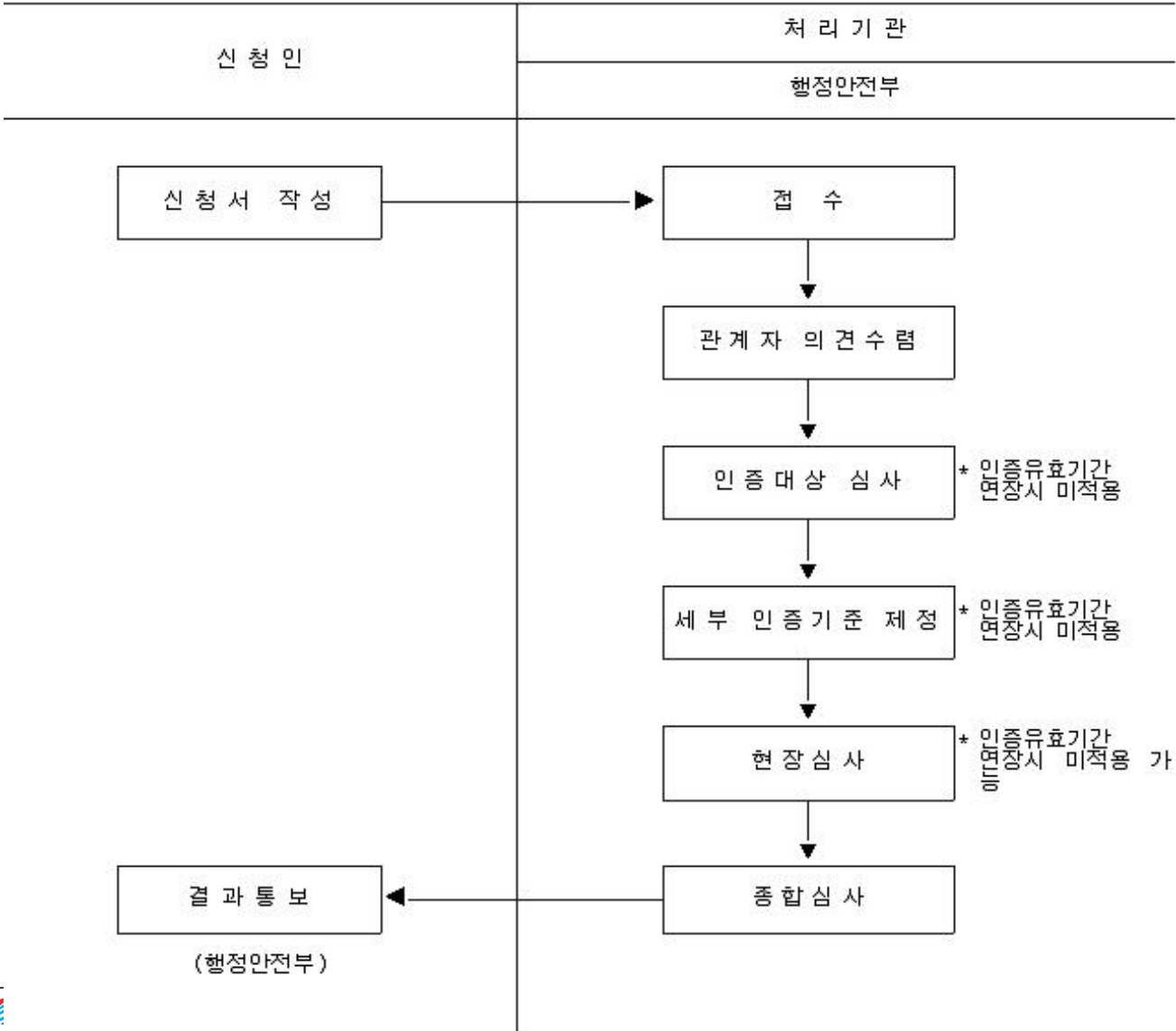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제 호		
재난 안전 제품 인증서		
제품명		
제품 보유자	업체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소재지(주소)	
인증번호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제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